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송윤아 연구위원

-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 아니라 1인 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동기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24%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 원의 28%(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합계)를 차지함
 - 동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수 합계)를 차지함
 -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6년 52만 원에 이름
-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1인 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함
 -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 안 294%(연평균 98.5%) 증가함
 -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 수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차보험 한 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바,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방진 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 인 정기준을 마련하여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방진료의 수가 및 인정기준과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의약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진료비가 상 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함¹⁾
 - 한방진료비는 2014년 2,698억 원에서 2016년 4,635억 원으로 72% 증가한 반면, 그 외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14년 1조 1,536억 원에서 2016년 1조 1,951억 원으로 4% 증가함²⁾
 -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종합병원(24%), 한의원(18%), 병원(16%), 의원(15%), 상급종합 병원(13%), 한방병원(10%) 순임
- 본고에서는 2014년 이후 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환자 수, 1인당 진료비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함
 - 현재의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한방진료비의 증가 자체를 문제로 볼 수 없지만 한방진료비의 구성요 소와 증가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방진료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 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7.9% 증가한 1조 6.586억 원을 기록함
 -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환자 수와 1인당 진료비가 연평균 2.5%, 5.3%씩 증가함(〈표 1〉 참조)
 - 특히 외래진료비와 1인당 외래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16.8%, 11.7%로 빠르게 증가함

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7. 6. 28)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최초로 공개된다!"

²⁾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통계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 10개로 구분함. 본고에서 한방 의료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의미하며 한방진료비는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의미함

〈표 1〉자동차보험 입원·외래 진료비(2014~2016년)

	•	,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진료비(억 원)	14,234	15,558	16,586	7.9%	
	환자 수(명)	1,940,856	1,994,690	2,038,018	2.5%	
	1인당 진료비(천 원)	733	780	814	5.3%	
입원	진료비	9,723	10,233	10,433	3.6%	
	환자 수	729,036	706,830	689,912	-2.7%	
	1인당 진료비	1,334	1,448	1,512	6.5%	
외래	진료비	4,511	5,324	6,153	16.8%	
	환자 수	1,572,772	1,656,103	1,718,117	4.5%	
	1인당 진료비	287	322	358	11.7%	

주: 1) 환자 수는 사고접수번호, 보험회사코드, 주민등록번호로 산출함

2) 입원·외래별 환자 수를 단순 합산 시 중복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6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46%, 24% 증가하여 2016년 한방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27.9%를 차지함
 -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는 2016년 종합병원(24%), 한의원(18%), 병원(16%), 의원(15%). 상급종합병원(13%). 한방병원(10%) 순으로 높음(⟨그림 1⟩ 참조)³)
 - 양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한방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뚜렷함

〈그림 1〉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그림 2〉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환자 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4~2016년 기간 동안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함⁴⁾

^{3) 2016}년 총 18,327개 요양기관(전체 28.2%)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청구건수는 한의원 10,719기관 (58.5%), 의원 4,976기관(27.2%), 병원 291기관(5.7%) 순으로 많음

⁴⁾ 의료기관 종별 환자 수를 단순 합산 시 중복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류별 환자 수 구성비 계산 시 의료기관

-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의원(33%), 병원(21%), 한의원(19%), 종합병원(16%), 한방병원(8%), 상급종합병원(3.3%) 순으로 많음(〈그림 2〉참조)
- 동기간 양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함
- 2014~2016년 기간 동안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6년 52만 원에 이름
 - 1인당 진료비는 201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235만 원), 종합병원(90만 원), 한방병원(78만 원), 한의원(57만 원), 병원(46만 원), 의원(27만 원) 순으로 높음(〈그림 3〉참조)
 - 1인당 외래진료비는 2016년 기준 한의원(56만 원), 한방병원(52만 원), 상급종합병원(38만 원), 종합병원(19만 원), 병의원(13만 원) 순으로 높음(⟨그림 4⟩ 참조)

〈그림 3〉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



〈그림 4〉의료기관 종별 자동차보험 1인당 외래진료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종합해보면,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한방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수뿐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기인함
 - 동기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의료기관의 1인당 진료비 증가는 한방진료비 증가가 환자 수뿐 아니라 진료 횟수 또는 진료가격 상승에 기인함을 의미함

가 중복화자 고려하지 않음. 2016년 전체 화자 수는 204만 명으로 의료기관 가 중복화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278만 명임

3.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구성과 전망



■ 2014~2016년 기간 동안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연평균 36.8% 증가.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함⁵⁾

● 2016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이 전년 대비 40.4%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9.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급여항목은 20.3% 증가하여 한방진료비의 50.5%를 차지함(〈표 2〉참조)

〈표 2〉 자동차보험 한방비급여 진료비 구성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증감률	진료비	구성비	증감률
양바		11,536	81.0	11,978	77.0	3.8	11,951	72.1	-0.2
	한방	2,698	19.0	3,580	23.0	32.7	4,635	27.9	29.5
	급여 항목	1,473	54.6	1,944	54.3	32.0	2,339	50.5	20.3
	비급여 항목	1,226	45.4	1,636	45.7	33.5	2,296	49.5	40.4
	첩약	747	61.0	974	59.5	30.3	1,249	54.4	28.3
	추나요법	250	20.4	335	20.5	34.4	416	18.1	24.1
	한방물리요법	83	6.7	124	7.6	50.3	327	14.2	162.9
	약침	144	11.7	198	12.1	38.0	295	12.9	49.0
	기타	3	0.2	4	0.3	69.5	9	0.4	99.1
총진료비		14,234	100.0	15,558	100.0	9.3	16,586	100.0	6.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연평균 98.5%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 한방 관련 의약품과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또 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음⁶⁾
-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54.4%를 차지하는 첩약은 전년 대비 28.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물리요법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5년 50.3%에서 2016년 162.9%로 상승함(〈표 2〉참조)

➡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의 양적인 증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

⁵⁾ 본고에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비로 인정·보장하는 항목을 의미함

⁶⁾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2월(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지난 7년(2009~2016년) 동안 한방병원은 8.6% 증가하여 282개소, 한의원은 2.4% 증가한 13.868개소인 반면, 동기간 1사업자당 인구 수는 1.9% 감소한 3.622명임⁷⁾
-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가 한방 의료기관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
 - 2015년 한방 의료기관의 매출액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방병원이 27.6%, 한의원 이 5.7%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각각 3.2%p. 1.2%p 증가함(〈표 3〉참조)⁸⁾

〈표 3〉 한방 의료기관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단위: 억원,%)

78	총매출액		1사업자당 매출액		건강보험 비율		자동차보험 비율	
구분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2014년	3,221	42,253 (39,446)	1,122	299	16.9	1.0	24.4	4.5
2015년	3,983	43,230	1,319	306	14.6	1.0	27.6	5.7

주: 한방병원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비율 =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요양급여비용 / 한방병원 총매출액 자료: 한방 의료기관의 총매출액은 국세통계, 괄호 안은 국민의료비 계정의 한의원 매출(기타보건의료임상종사자 HP3.3)을 참고함

4. 결론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⁹⁾
 - 개정안에는 경치전극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

⁷⁾ 통계청

⁸⁾ 한방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사업자가 신고한 것으로. 과소 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온냉경락요법 등을 세부행위로 분류하고 수가를 산정

-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세부행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방처럼 별도의 신 의료기술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고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분류를 통한 적정 수가 산출·적용이 불가피함
- 다만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하여 양·한방 간 형평성 문제, 의·약학적 타당성, 건강보험의 급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행위분류·인정범위·수가 조정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함
 - 한의약의 경우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첫째,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탕약 한약이나 환 등의 경우에는 그 포장에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분표시가의무사항이 아님
 - 「약사법」에서는 한방 의약품의 경우 그 원료 및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원산지 주체 역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음¹0)
 - ☞ 둘째. 한의사는「의료법」상 처방전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음¹¹)
 - 셋째,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자율적 원산지 표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 표기의무 대상이 아님
 -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한의약 분업 미실시 등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의약계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kiri

^{10) 「}약사법」제56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4일 신설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제9항에서는 '「약사법」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1) 「}의료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함